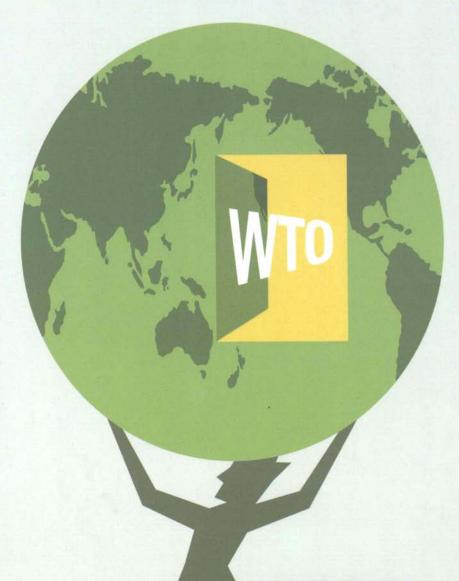
# 농산물 시장개방: 그 특과 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농산물 시장개방: 그 특과 실



## 0 지료는

일반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농업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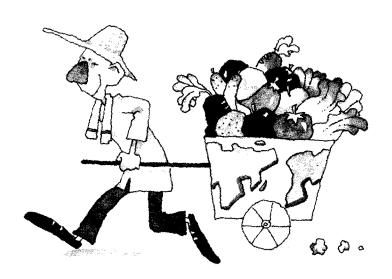
집필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 연구위원

## 차 리

Ⅰ. 농산물 무역자유화	5
1.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나?	7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9
3. 농업개방의 득과 실	11
Ⅱ. WTO <b>농업협상 현황</b> 과 전덕	13
1. WTO 농업협상이란?	15
2. WTO 농업협상 진행 현황	18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27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29
5. 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30
6. 개도국지위란 무엇인가?	33
Ⅲ. 자유무역협정과 농업	35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37
2.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을 제외할 수 있	는가? 39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	7}? 40
IV. <b>농업과 환경, 식품안정성</b>	43
1. 농업과 환경	45
2 유저자벼형신포 무엇이 무제이가?	46



## 농산물 무역자유화



## I. 농산물 무역자유화

- 1.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나?
-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 3. 농업개방의 득과 실



##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나?

농업은 우리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농업이 보 호되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경쟁 력 개념을 도입하여 경쟁력 없는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공업이나 서비 스 등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농업에 비교우위 론을 도입하여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자는 사람도 도시국가나 농 산물 수출국의 일부 수출업자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도 있다. 먼저 하나의 예를 들어 1970~80년대의 바나나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요즘 초등학생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바나나는 소풍갈 때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 어머니가 사주시던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에서 비싼 수입워유를 사용하 여 재배하던 바나나가 이제 수입개방 이후 도로의 정체가 심할 때 심심풀 이로 서민들도 소비할 수 있는 과일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 곳 에서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통하여 값싸게 공급하여 일반소비자들 도 필요할 때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대략 200만 명으로 국민총생산(GDP)의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산업이다. 그러나 WTO출범 이후 4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농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업에 공산품과 똑같은비교우위라는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세계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도 보호해야 할 품목과개방해야 할 품목을 구분하여 현명히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개방에 따라 손실을 보는 농민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수반된다면 도리어 우리 농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UR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on Trade Concern)'이라는 개념이 발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를 "농업은 식량공급이라는 기초적인 기능 이외에도 자연경관을 가꾸고 경지보전,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의 보존 등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며,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활력에 기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농업에는 농산물생산이라는 고유의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고용유지, 지역사회의 유지, 자연경관의 보호, 환경보호와 기타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여러 부수적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농업은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전통문화를 보전하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주로 농산물 수입국들에서 주장되고 있는데 농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는 식량생산 이외의 이러한 다원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만약 우리 농촌에서 논이 모두 없어지고 그 곳에 아파트나 공장들이 들어선다면, 여름 장마철에 많은 강수량을 저 장하던 논이 없어짐에 따라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녹색공간이 없어지며 공해가 심각해지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농업 에는 공기 및 수질의 정화, 토양유실 방지, 홍수예방, 지하수 보충 등 부 수적 기능이 있는 것이다.

또한,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도 많은 고산지대의 목장들을 정부가 보 조해주고 이를 통해 스위스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기능 들은 부수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실질적인 이익이 얼마나 되 는지를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농업을 집약적으로 수 행하다보면 도리어 과도한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될 우 려도 있다. 또한 자연경관의 훼손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의 다워 적 기능이란 특성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농업개방의 득과 실

농업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익을 보게 되는 집단과 손해를 보게 되는 집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공산품의 개방과 마찬가지이다. 이익을 보게되는 집단에는 어떤 집단이 있을까? 먼저 질 좋은 농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되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즉, 종전에는 소비할 수 없었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삶의 질은 높아지게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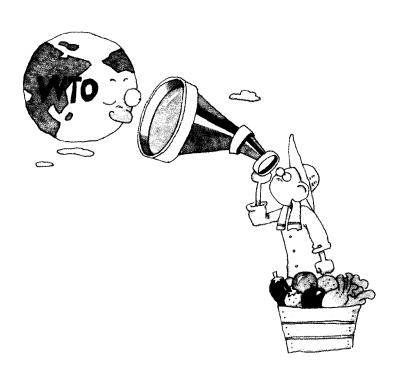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종전에는 우리 국민들은 겨울에는 포도를 구입할 수 없었으나 현재 수입이 행해지고 있어 겨울에도 포도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쇠고기의 경우에도 수입쇠고기가 들어옴에 따라 비싼 한우를 소비할 수 없는 소비자들도 이제는 쇠고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업자들도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손해를 보게 되는 집단에는 무엇보다 먼저 농민들이 있을 것이다. 종전의 높은 관세에 의해 가격이 높아진 수입품보다 값싸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농민들은 더 이상 관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됨에따라 질적으로 차별화할 수 없다면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듯 국민경제 전체로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하더라도 이익을 보게 되는 집단은 광범위하여 직접 느끼는 효과가 작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계층은 그 수가 작아서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손실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 즉, 일인당 느끼는 손실은 손해를 보는 계층이 이익을 보게 되는 계층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국민경제 전반 에 걸쳐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온다면 이를 손해를 보는 계층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만이 농 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자기나라의 농산물 시 장을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한국의 채소와 같은 신선농산물의 일본 수출이 급증하여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 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WTO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 II. WTO 동어협상 현황과 건방

- 1. WTO 농업협상이란?
- 2. WTO 농업협상 진행 현황
-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 5. 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 6. 개도국지위란 무엇인가?



## WTO 농업협상이란?

1986년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어(협상이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었 으므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한다) 9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5년 출범된 WTO체제는 종전의 다자간 무역체제와는 달리 농업도 포함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WTO체제 이전에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보조금 등은 양 자간 차원에서는 논의되고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기는 하였 으나 이에 대해 일관되게 규율하는 국제적인 규범은 없었다. 그런데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던 여러 가지 수입제한 요 소들을 관세를 통한 수입제한으로 일원화한 뒤 감축하기로 하고, 한 국가 에 대해 적용해주던 우대조치를 모든 국가들에게 확대해 주도록 되었으 며,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보조금이나 수출보조금들도 감 축하기로 하였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산물에 관해서는 우리나 라, 일본, 필리핀의 쌀이나 이스라엘의 양고기, 전지분유, 치즈류와 같은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관세만에 의한" 제한이 허용되고 있 다. 즉, UR 이전에는 일부 농산물의 수입은 쿼터나 비관세수단에 의해서 도 제약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UR을 거치면서 비슷한 보호수준을 제공 하는 관세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종전의 정책에 의해 국내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00% 높았다면 100%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 이다 (이러한 방식을 "관세화(tariffication)"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협정이 효력을 발효하기 이전에 수입되던 물량이 계속 수 입되어야 한다거나 일정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 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인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 TRQ)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새로운 양허관세와 관세할당은 1995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고 UR 협상 참가국 중 선진국은 6년 동안 품목당 관세를 최소 15% 이상 감축하 고 평균관세를 36% 감축하며 개도국은 10년 동안 품목당 관세를 최소 10% 이상 감축하고 평균관세를 24% 감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빈개 도국은 관세감축의 의무를 지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종전에 적용되던 비관세 장벽이 관세로 전환된 농산물의 경우 수 입품의 가격급락이나 물량급증으로 인한 수입국 농민의 손실을 막기 위 해 각국 정부는 특별한 긴급조치(긴급수입제한: special safeguard)를 취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WTO농업협정은 생산을 직접 장 려하는 보조정책과 생산에 직접 영향이 없는 보조정책을 구분하여 생산 과 교역에 직접영향을 주는 국내정책은 감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 고, 선진국은 6년 동안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국내보조금의 20%, 개도 국은 10년 동안 13%를 감축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중이다.

그러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단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허용대상농업보조(green box)라고 총칭하고 있으며 이에는 연구개 발, 병충해구제, 기간시설 및 식량안보에 대한 보조가 포함되며, 이와 더 불어 직접소득보조, 농민의 농업구조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 환경이 나 지역보조프로그램하에서의 직접지불과 같이 생산을 장려하지 않는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도 포함된다. 여기서 영문명칭의 green은 교통신호 등에서의 녹색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그러한 보조금은 허용된다는 의 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농민이 생산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지불되는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 개도국에서 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장려하는 프 로그램에 대한 특정정부보조,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산물 생산총액의 작 은 규모(선진국의 경우 5% 이하, 개도국의 경우 10% 이하)에 해당하는 보조금(de minimis)도 허용되고 있다.

또한, 농업협정은 회원국의 양허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선진국 은 수출보조금 총액의 36%와 수출보조물량의 21%를 6년에 걸쳐 감축하 고, 개도국은 10년 동안 수출보조금 총액의 24%와 수출보조물량의 14% 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미진하다고 생각되어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 하기로 미리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WTO에서는 농업에 관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가 WTO 농업협상의 진전을 반대할 수도 없는 것 이다.



### WTO 농업협상 진행 현황

여러분들은 1999년도 12월 미국의 시에틀에서 열렸던 WTO각료회담 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회담은 WTO체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인 식하에 모든 교역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여 - 우리는 이런 협상을 뉴라운드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교역질서 를 만들기 위한 회의였다. 물론 사안별로 각국은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였 고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

농업과 서비스에 관한 협상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WTO협정상에 이미 2000년부터는 협상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 2000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 다. 따라서, 먼저 1단계 협상으로 각국이 차기협상에서의 자국의 입장을 밝히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총 47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총 6차의 회의를 거쳐 각국은 자국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해 찬반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 2001년 5월부터 는 제2단계 협상이 시작되어 주제별로 5월에는 TRQ 관리방법, 관세, 감 축대상 국내보조에 관해, 7월에는 수출보조,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량안 보, 수출제한, 식품안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9월에는 농존개발, 지리적 표시, 허용보조, 블루박스, 특별긴급관세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 고 12월에는 환경, 무역특혜, 식량원조, 소비자정보와 표시, 분야별 자유 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별 제안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던 것이 주제별 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협상의 주요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구체적인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11월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차 WTO 각료회담에 서의 뉴라우드 출범에 관한 결정을 기다려 농업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부분 회원국의 입장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TRQ 관리방법

스위스, EU, 일본 등은 추가적인 paper를 통해 TRQ 관리방법에 대한 자국의 경험이나 TRO 관리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호주 및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 은 단일한 최적의 TRQ 관리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무역 왜곡적인 조치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TRQ 제도가 농산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전제 하고,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관리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엄격 하고 획일적인 규범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특히 공매제도 는 경쟁적 시장조건 조성, 무차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 2) 관세

호주는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의 판단기준으로 포괄성, 관세 격차·고율관세·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상승 문제 해결 여부, 관세감축 약속의 단순성과 투명성, TRQ 물량과 이에 대한 관세의 개선여부, 개도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 정도, 개도국우대조치를 제시하고, UR방 식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일정률 관세인하 방식(flat cut)과 관세조화방식, TRQ물량의 대폭적인 확 대, 개도국우대를 결합한 혼합방식(Cocktail approach)을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 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농산물 관세문제를 공산품과 똑같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단기간 내에 급속한 관세감축안의 비 현실성을 지적하고, 농업개혁은 기존관세화 모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 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도 농업의 다원 적 기능의 발휘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농업활동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정부개입이 필요한데, 관세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합법적인 개입수단이므로 소비·생산상황, 수요, 협상의 역사 등 을 감안한 신축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가간 관세수준을 비슷 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나 분야별접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농산물의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국가간 관세격차가 상당히 크므로 관세를 상당수준 감축하고 국가간 관세격차를 줄여야 하 고,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공식에 의한 감축을 기본으로 하고 R/O방식"과 분야별 접근을 혼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도 높은 관세, 중간 수준의 관세, 낮은 관세로 구분하여 감축률을 달리하는 복합공식(multiple formula)에 의한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분야별 접근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였다.

#### 3) 감축대상 국내보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감축방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신축성을 인정하면서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허용보조 유지 및 총액기준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호주는 감축약속의 우회방지를 위한 규율 강화,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상당수준 감축을 통한 철폐, 품목을 기준으로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감축하는 공식 도입, 최소허용보조의 재검토 등을 제기하였다.

EU는 총액기준 감축, 시장가격과 연계된 보조에 대한 규율 강화, 품목 불특정 AMS에 대한 규율 강화,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 수준 인하, Blue Box와 허용보조의 개념 유지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특히, Blue Box는 무역왜곡이 적어 허용보조에 가까운 조치라고 주장하고, 총액기준 감축은 보조금의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정책결정상 회원국의 재량의 필요성을 잘 조화시킨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sup>1)</sup> Request and offer system: 국제협상시 개별국가끼리 관심있는 품목을 상호제시하여 품목별로 관세율 인하나 개방정도를 협상하는 방식

일본은 농업개혁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현행 보조금분류체계를 유지해 야 하고, 감축과정에서 UR협상 결과의 이행경험과 NTC를 고려해야 하 며,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점진적인 감축이 바람직하고, 최소허용보조는 현 행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Amber Box와 Blue Box는 각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하게 되도록 감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캐나다는 선진 국의 최소허용보조 수준을 인하하고, 허용보조의 기본요건인 무역비왜 곡성(Non-trade-dstorting)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규범의 우회를 막고, 모 든 형태의 보조금에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4) 수출보조 · 수출신용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등 케언즈그룹"과 미국은 수출보조가 가장 무 역왜곡적이라며 수출보조의 철폐를 주장하였으나 EU, 스위스 등은 수출 보조 효과가 있는 모든 조치들에 대해 동일한 규범이 마련된다는 전제하 에 수출보조 감축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수출신용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는 규범마련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방 어적인 입장에 있는 미국은 수출신용이 수출보조보다 덜 무역왜곡적이 고 외환부족 개도국의 식량공급에 유용하다고 주장하였고 우리나라는

<sup>2)</sup> 농산물 수출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미한 보조만을 지급하는 국가그룹으로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이 포함되어 있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 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피지, 파라과 이,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18개국이 회원국임.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개도국의 수출보조에 대한 우대조치는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 5) 국영무역

국영무역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EU는 수입국영무역 및 수출국 영무역에 대한 규범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수출국영무역을 운영 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등은 국영무역기업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운영 에 어떠한 무역왜곡효과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입국영무역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등은 수출국영무역에 대해서도 규범강화가 필요함을 추장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국영무역기업이 GATT가 인정한 합법적 제도이고 수입국영무역에 대해 효과적인 규범이 이미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 6) 식량안보·수출제한

케언즈그룹은 식량안보는 개도국의 문제이며 무역자유화를 통해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고, 개도국의 수 출세는 수입국들의 높은 관세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를 해결하 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식량안보를 위해 선진 국의 무역왜곡적 조치를 대폭 감축하고 개도국에게는 충분한 신축성을 부여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개도국의 경우 재정 확보 차원에서 수출세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미국과 EU는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지속적 무역자유화 추진이 중요하 다고 주장하였고, 우리나라는 식량안보가 모든 나라의 문제이며, 국내생 산이 필요하며 특히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과 연계된 보조조치가 필 요하고, 수출제한과 수출세에 대한 규범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 다.

#### 7) 식품안전

EU는 최근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 므로 관련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원칙의 구체적 적 용(SPS협정 제5조 제7항)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많은 나라는 식품안전문제가 농업협상의 범위 밖 이며, 사전예방원칙이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 장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WTO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 농업협정이 식품안전문제 를 다루기에 부족하므로 이번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8) 농촌개발

미국, 케언즈그룹,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농촌개발의 의미 가 다르며 선진국의 무역왜곡적 조치가 개도국의 농촌개발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반면, EU, 스위스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농 촌개발이 갖는 의미가 각기 다르므로 모든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적 용가능한 규범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도 농촌개발과 농 업생산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현행 허용보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각국

이 자국 사정에 맞게 적용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 9) 허용보조

케언즈그룹, 개도국들은 무역왜곡이 없도록 허용보조의 각 정책특정적 요건들을 강화하고 허용보조 총액에 상한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 국은 현행 요건이 7년 전에 만들어져서 각국이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들 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허용보조의 기본 요건을 벗어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U는 현행 허용보조를 유지하되 경기변동이나 생산, 가격, 투 입요소과 연계되는 보조는 허용보조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동물 복지를 위한 지불은 감축약속에서 면제할 것을 주장하였고, 우리나라는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고 NTC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현 행 허용보조 규범을 신축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고, 노르웨이, 스위 스 등 여타 NTC국가들도 유사한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 10) 블루박스

케언즈그룹, 미국, 인도는 블루박스가 무역왜곡의 측면에서 감축보조 와 차이가 없으므로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행 경제국가,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블루박스 유지를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는 블루박스가 무역왜곡적 정책을 무역왜곡이 없는 정책으로 전환 하는 데 유용하므로 개혁과정 동안 유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 11) 특별긴급관세(SSG)

미국, 케언즈그룹은 동 제도가 과도기적인 조치이고 소수 선진국에 의 해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고, 개 도국들은 현행 SSG는 철폐하고, 대신 개도국에게만 적용가능한 SSG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계절성, 부패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 새로운 Safeguard 도입을, 노르웨이는 대상국가 확대를, 스위스는 보다 현실성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고, 우리나라는 SSG가 관세화의 불가 분의 요소이므로 개혁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고, 계절성 또는 부패성이 있는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Safeguard제도 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 12) 지리적 표시제

EU와 스위스는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케언즈그룹은 동 이슈가 농업협상 범위 밖이고 기본적으로 TRIPs 이사회 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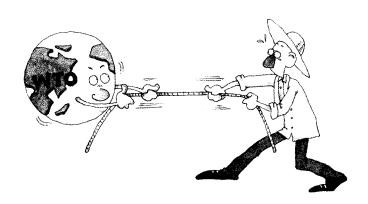
##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아직까지 농업협상의 방식이나 기한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뉴라운드와의 연계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TO의 농업협정에 나타나고 있는 차기협상의 목적이 보조 및 보호에 대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아직 그 감축폭이나 감축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고 단지 농산물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국들은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폭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매우 기본적인 입장만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금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담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이 성사된다면 농업에 관한 협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비록 그 출범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농업에 관해서는 수출국들이 협상의 조속한 진행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농업협상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회원국간 균형된 이익의 반영과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위해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 국내보조에 대해 서는 UR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수출보조금을 감축하기는 하되 완전철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케언즈그룹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보호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자유화의 수준을 높이며 관세의 대폭인하 또는 철폐와 국내보조의 대폭감축 및 블루박스의 폐지와 수출보조금의 완전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양자간의 입장조율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국, 수입국 내에서도 협상 의제별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각국은 자국의 입장에 따라 의제별로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에 인도 등을 중심으로 협상의 한 축을 차지하였던 개도국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에 따른 우리의 개 방약속에 따라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규제 나 쿼터등의 관세로의 전환시 우리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허용받을 수 있 었고, 따라서 비록 WTO출범이후 관세율이 인하되기는 하였으나 고율관 세를 유지할 수 있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보조금의 경우에도 감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추곡수매등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에 관한 새로운 협상에서는 관세와 보조금의 추가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우리 정부가 WTO에 약속한 관세율(양허관세율)이 실제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실행관세율)보다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양허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실행관세율을 낮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차이를 넘는 관세인하가 추진된다면 우리 농업에 부담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관세감축 및 보조금 감축을 어느 기간 동안 행해 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을 예측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UR당시의 협상결과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방의 방법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허용이라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즉, 개방 첫해에는 국내수요의 1%인 51,000톤을 의무수입해 주기로 하고 매년 그 수입량을 늘려나가 2004년에는 국내수요의 4%인 205,228톤을 수입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의 쌀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다시 협 상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는 향후 우리나라 쌀시장을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재협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은 최소시장접근물량에 의한 시장개방방식을 채택하였던 일본이 1999 년 4월 이러한 방식을 포기하고 관세에 의한 시장개방을 도입하여 우리 나라의 협상입지가 좁아졌다는 점과 우리나라 쌀시장에 대해 주요 쌀 생 산국들이 그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의 수출이 부진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 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쌀 산업은 개방의 폭을 확대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쌀에 대한 국제 협상 력의 제고와 이에 따른 국내대책의 우선적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다

물론 일본이 쌀을 관세화하게 된 데에는 우리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가 있다. 예를 들어 쌀의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와 24%로 한국의 24%와 54%보다는 낮다는 점과 의무 수입물량을 그 당시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던 재고관리비용의 증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쌀에 대한 관세화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신앙과 같은 믿음이 있다. 그 배후에는 쌀을 관세화하게 되면 수입물량이 상당수준 증 가하게 되고 우리 농민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쌀 생산을 포기하게 되 며 이에 따라 농업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는 논리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 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소시장접근방식을 유지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차기협상에서는 그 물량은 증대시켜 주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수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 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세수입도 발생하게 되어 이러한 재정수입을 WTO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조금의 형 대로 쌀생산 농가에게 되돌려 준다면 쌀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농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쌀에 대한 관세화만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제는 관세화와 최소시장접 근 방식 중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농민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 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농민들도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쌀이나 유기농법을 사용한 쌀 등의 생산에 적극 참여하여 단 위수확당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쌀 수요구조가 가지고 있는 수요과 점적 지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국제 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약 2,000만 톤 정도이고 이 중 우리가 소비하는 자포니카 타입의 거래량은 약 300만 톤 정도이고 이를 대량으 로 소비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부 국 가의 흉작 등으로 인해 공급량이 급감하면 국제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 우 높기는 하지만 수요하는 국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개도국지위란 무엇인가?

WTO협정의 여러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나타나고 있다. 즉, 관세인하나 보조금의 감축의 경우, 선진국보다는 보다 더 긴 이행기간을 주고 있으며 그 감축폭도 낮게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UR협상당시에는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이러한 우대조치를 적용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한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위정도이고 국민소득도 개도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국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OECD가입시에도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임을 인정받았고 개도국지위를 결정하는 국제기준은 없으며 당사국이주장하는 바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례라는 것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어 과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도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할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WTO 가입협상을 하면서 최소허용보조금의 경우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유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으로 삼분하고 있는 현행 WTO의 기준을 선발개도국, 후발개도국을 포함하는 4분법 등을 제안하는 방법도 강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 자유무역협정과 농업



# Ⅲ. 자유무여협정과 농업

-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 2.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을 제외할 수 있는가?
-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이란 회원국간에 관세인하나 기타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 하여 회위국가 무역이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WTO의 기본워칙이라 할 수 있는 모든 WTO회원국에는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의 원 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지만 WTO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회원국간 교 역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세계전체의 교역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비회원국에 대한 장벽이 협정체결 전보다 높아져서는 안된다는 조건 등 여러 가지 제한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은 세계경제에서 하나의 조류로 자리잡고 있는 현상 으로 약 150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은 종전에는 발생할 수 없었던 무역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무역창출 효과 와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바꾸게 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다음 표들과 같은 생산원가와 가격구조 가 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가정해 보자. 첫 번째 표에 나오는 경우는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FTA가 없 는 경우, 관세 50%를 부과한 후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은 각각

무역	창	출	효	괴	Ļ
----	---	---	---	---	---

,	한 <del>국</del>	중국	일본
생산원가	100	80	90
관세(50%) 포함가격	100	120	145
FTA체결후 가격	100	120	90

120과 150이 되어 국내제품의 가격인 100보다 높게 되어 수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 일간 FTA의 결과 일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은 90원이 되어 일본으로부터의수입이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새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역전환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아래 표와 같은 경우 한 · 일간 FTA가 체결되기 전에는 관세를 포함한 가격이 중국산의 경우 90이고 일본산의 경우에는 120이기 때문에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 · 일간 FTA의 체결이후에는 일본산이 중국산보다 저렴하게 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행하게 되어 수입선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활성화하고 있고 따라서 무역전환효과 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정부도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여 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무역전환효과

	한국	중국	일본
생산원가	100	60	80
관세(50%) 포함가격	100	90	120
FTA체결후 가격	100	90	80



####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을 제외할 수 있는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WTO협정에 의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서 한 분야를 제외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 정을 체결한다면 농업분야 전체를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모 든 무역에 대해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만이 체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 며, 여기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라 함은 양국간에 거래되는 모든 물품 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역이 가능한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과 싱가폴간에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농 업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나라도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에서 농업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 본과 싱가폴도 양국간의 농산물교역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 · 칠레 자유 무역협정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이며, 이러한 주장도 한 부문 전체를 제외 하는 것은 WTO규정상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FTA를 추진한다면 농업분야 전체를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예외와 이 행기간의 연장을 이용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과 칠레간의 FTA는 상호이해 관계의 차이로 인해 결정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98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한·칠레 FTA를 추진키로 의결하고 99년 9월 APEC 정상회담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 개시에 합의한 후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작업반 회의와 협상을 거쳐 상품 양허안을 상호 교환한 바 있다.

2000년 5월 개최된 제3차 협상에서 우리측은 WTO 농업협상 이후 논의 품목을 양허기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칠 레측은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WTO 농업협상 이후 논의, 예외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2000년 5월 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품목 리스트를 전달하였는데 이에는 총 469개(우리나라 HS 10단위)의 농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농산물 품목중 65%는 10년이내 관세 철폐, 나머지 품목은 특혜세율(50% 감축), 계절관세, WTO 농업협상 이후 논의에 포함하겠다는 기본입장하에, 계절관세는 포도(12~2월), 키위(6~8월)에

적용하고 사과, 배, 살구, 복숭아, 자두, 단감,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WTO 농업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칠레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WTO 농업협상 이후 논의, 특혜관세 등 "10년이내 전품목 관세철폐 원칙"에 대한 예외 부여에 대해 우려를 표 명하였고, 2000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협상에서도 양허안 작성 기준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품목별 협의는 시행 되지 못하였다. 칠레측은 모든 품목의 10년이내 관세철폐 원칙을 강조하 며. 자국의 관심품목이 우리측이 제시한 WTO 농업협상 이후 논의, TRQ, 특혜관세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칠레측은 총 401 개(우리나라 HS 10단위) 품목(농산물: 263, 임산물: 21, 수산물: 177)의 새로운 자국 관심품목 리스트를 전달하였다.

그 후 칠레측은 2001년 5월 한국측 양허안은 농산물 분야에서 "WTO 농업협상 이후 논의"등 관세철폐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예외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측이 예외적 조치를 없애도록 양허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차기 협상을 WTO 농업 협상 종료 이후 또는 그 이전 이라도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는 시점까지 연기할 것을 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 농업과 환경, 식품안정성



## IV. 농여라 확명, 식품안정당

- 1. 농업과 환경
- 2. 유전자변형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 농업과 환경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농업에는 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논의 경우 여름철 장마기에 많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에 해당되는 홍수조절 기능을 갖고 있으며 토양유실 방지나 수질보전 등의 역할도 한다. 또한 공기정화기능이나 자연경관의 보호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의 농산물 생산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부가적 기능인 환경 보전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 농업이 환경에 좋은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기농법 등을 사용하는 농민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지 나친 사용 등으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 또한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따라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지나친 비료나 농약의 사용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 또한 보다 안 전한 농산물의 소비를 원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는 점을 감안한 환경 친화적 농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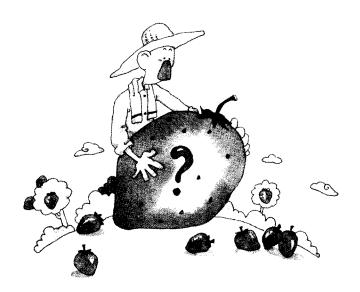
## 유전자변형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의 조작을 통해서 수확량을 높이거나 병충 해에 강한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수수나 콩 등이 있다.

현재 농산물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먼저 유전자변형식품이 향후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의 탄생을 제3의 녹색혁명 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인체에 유해하 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자유로운 제품의 국제적 이동을 통하여 식량 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유 전자변형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실히 입중되지 않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인간의 건강에 많은 해를 미칠 수도 있어 이는 엄격히 규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물론 이 두가지 견해를 주장하는 배후에는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농산물 교역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농산물의 교역 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등은 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 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EU, 일본 등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EU, 일본은 제품에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것을 표기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 등은 실질적으로 이를 구분 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수출국들이 유전자변형식품을 수출용으로만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개발해 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만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역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화: 02)3460-1160 FAX: 02)3460-1077 http://www.kiep.go.kr

#### 경제개방바로알기 6

#### 농산물 시장개방: 그 특과 실

2001년 10월 30일 인쇄

2001년 11월 7일 발행

발행인 이경태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오롬시스템(주) 전화 :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급함】